

부산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0나6253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망 C의 소송수계인

1. J

2. L

3. B

변 론 종 결 2021. 10. 1.

판 결 선 고 2021. 11. 12.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10. 13. 선고 2018가단13419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와 망 C 사이에 2014. 6. 28. 체결된 1,000만 원의 증여계약 및 2014. 7. 4. 체결된 1억 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J는 4,285,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42,857,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L, B은 각 2,857,1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각 28,751,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1)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이라는 대부업체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원고로부터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D'에 투자하면서 원고에게 '1억 원을 월 1.4%의 이율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2013. 12. 13.자 차용금증서 및 '7,000만 원을 월 1.4%의 이율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2014. 1. 10.자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2014. 6. 26. H에게 자신의 소유인 부산 수영구 E 외 3필지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7. 4. H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H는 같은 날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피고 B의 모친인 C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 B은 2014. 6. 28. C의 I은행 계좌로 H로부터 받은 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4 형제19296호로 '피고 J, B과 C이 공모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편취하였고, 피고 B은 위 대여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아파트를 허위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2014. 11. 27.「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D'에 투자하였는데 'D'의 실제 운영자인 K이 이를 횡령하는 바람에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고, 원고도 이 사건 대여금의 용도 등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점, H는 2014. 7. 4.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C의 I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등 피고 B과 H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매매계약이 재산의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부담에 해당하지 않는 점」등을 이유로 피고 J, B 및 C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부산지방법검찰청검사장은 2015. 1. 29. 원고에게 불기소이유통지를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단212905호로 피고 B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 10.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C은 2020. 3. 22.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J, 자녀들인 피고 L, B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I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매수인 H로 하여금 매매대금 중 1,000만 원 및 1억 원을 각 망인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는데, 망인이 피고 B에 대하여 1억 1,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갖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과 피고 B 사이에 1,000만 원 및 1억 원에 관하여 각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 B은 위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위 각 증여계약 체결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고, 망인은 피고 B의 모친으로 피고 B과 생계를 같이 하고, 이 사건 대여금이 ‘D’에 전달되면 자신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일부를 회수할 의도로 원고가 피고 B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D’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상당액의 채권을 회수하여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1억 원과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리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나. 2014. 6. 28.자 1,000만 원의 송금행위(이하 '제1 송금행위'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즉 원고는 2019. 8. 5. 피고 B이 H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1,000만 원을 수령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식회사 I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였다. 주식회사 I은 2019. 8. 20. 제1심 법원에 피고 B의 I은행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위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 B은 2014. 6. 25. H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은 뒤 2014. 6. 28. 망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9. 8. 20.경 무렵 제1 송금행위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2021. 7. 2.에서야 비로소 항소취지 등 변경신청서의 제출을 통하여 제1 송금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소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고 있었던 때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제1 송금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2)

다. 2014. 7. 4.자 1억 원의 송금행위(이하 '제2 송금행위'라 한다)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B은 2014. 8. 1.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5. 1. 29.경 원고에게 발송된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대금 중 1억 원이 망인의 I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이미 피고 B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어 원고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12. 11.에서야 비로소 제2 송금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제2 송금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의 소 역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각 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현철, 판사 조장현, 판사 엄지아

1)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만약 원고가 2020. 12. 2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고, 원고는 2020. 3. 24.자 청구취지 등 변경신청서에서는 제1 송금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를 별도로 구하고 있지 않다.